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83
----------	------

발의연월일 : 2007. 3. 26.

발의자 : 이경재 · 신명 · 김형주
신상진 · 김송자 · 신중식
정두언 · 박순자 · 김덕규
맹형규 · 장복심 · 배일도
문희 · 이윤성 · 박찬숙
단병호 · 박형준 · 이원복
심재엽 · 안홍준 · 조정식
김영주 · 정문헌 · 김석준
곽성문 · 김성조 · 고흥길
정진섭 · 이인기 · 안상수
김애실 의원(31인)

제안이유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로 인하여, UN 및 세계 각국은 환경 문제의 근본적, 예방적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음.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Agenda 21)’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그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2005년부

터 2014년까지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 계획이 선포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이행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강화되어가고 있음.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장기적인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교육에 관하여 현행 관계 법률의 몇몇 규정에서만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없어,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교육의 기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행, 환경교육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의 확산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및 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함(안 제6조).

라.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를 위해 사회환경교육사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환경교육 전문인력 및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업무를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라 함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회환경교육”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

교육 이외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장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2. 환경교육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와 연수
3.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 각 단위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방안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5.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
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시·도지
사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
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국무총리 산하에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조정 또는 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의결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추진 등 기타 환경교육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조정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장학지도 및 평가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증(준교사, 정교사 1급·2급, 교감, 교장)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연수에 환경교육 강좌 개설
4. 초·중등 교원에 대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에 관한 현직 연수 실시

제7조(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과 관련 강좌 개설
2. 학교의 자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친화적인 문화 형성
3. 학교가 소재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실천·보급
4. 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강좌 개설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과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등록과 지원

2.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이 관여하는 프로그램에 적용·운영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
3.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대상 연수에 환경교육관련 강좌 개설

제9조(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 책무) ①사업자는 환경보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인력 양성 등

제11조(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환경교육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

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에 노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둘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및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보 칩

제14조(토지와 건물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 자 또는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소유한 자가 해당 토지 나 건물을 다수인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체험 기회 장소로 자발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 력 및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 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 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① 동법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과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등록과 지원

② 동법 제10조(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동법 제11조(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③국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동법 제12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첫째, 동법은 사회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입법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기준과 규모 등이 구체화된 이후에 지원예산을 추계할 수 있음.

둘째, 동법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시책들은 환경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셋째, 이 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교육의 진흥은 유형의 투자보다는 사회 각 분야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는 무형의 시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비용을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하위 입법을 통해 법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가능함.

4. 작성자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최선두 사무관(2110-6687)